#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490

발의연월일: 2025. 1. 14.

발 의 자: 김선교·김위상·김성원

서천호 • 구자근 • 김상훈

김석기 · 정동만 · 최보윤

송석준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동산·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여 농산물, 가축, 수산물 등을 담보로 농어업 경영 및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농어업인들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비중이 낮아 현행법에 따른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에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·어업인을 추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

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5 호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동산 ·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5호 단서 중 "법인(상사법인, 민법법인, 특별법에 따른 법인,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"을 "법인(상사법인, 민법법인, 특별법에 따른 법인,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·어업인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법인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"을 "법인,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 를 등록한 농·어업인"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"사업자등록"을 "사업자등록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중 "사업자등록이"를 "사업자등록 또는 농어업경영정보가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"담보권설정자"는 이 법에 5. -----따라 동산·채권·지식재산권 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 한다. 다만, 동산ㆍ채권을 담 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 (상사법인, 민법법인, 특별법 (상사법인, 민법법인, 특별법 에 따른 법인, 외국법인을 말 에 따른 법인, 외국법인을 말 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「부 한다. 이하 같다). 「부가가치 가가치세법 | 에 따라 사업자 세법 |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또는 「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한 다.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\_ 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 록한 농·어업인-----. 6. ~ 11. (생 략) 6. ~ 11. (현행과 같음) 제3조(동산담보권의 목적물) ① 제3조(동산담보권의 목적물) ① 법인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법인,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

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(이 시업자등록을 한 사람 또는

하 "법인 등"이라 한다)이 담보

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

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

「농어<u>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</u>

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

경영정보를 등록한 농ㆍ어업인

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 략)

제4조(담보권설정자의 <u>사업자등</u> 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) 담보권설정자의 <u>사업자등록이</u>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2	• (3	(현	행과	같음	-)	
제4조	(담토	L권설	정자의	의	<u>사업</u>	자등
<u>록</u>	등의	말	<b>논</b> 와	동산	담보	권의
효력	丰) -			<u>사</u>	업자	등록
또는	- 농	-어업	경영기	정보기	<u>7}</u>	